

23.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년 3월 14일
- 발의의원 : 홍인표, 김규학, 김대현, 김병태, 김재우, 김지만, 서호영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3월 15일
- 상정일자 :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9년 3월 18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홍인표 의원)

□ 제안이유

-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수도권 집중투자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인프라 건설에 소외된 지방은 열악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끝없는 경제침체와 급격한 인구유출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음.
- 특히, 국가 간 경쟁의 시대를 지나, 도시 및 지역 간 글로벌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어 따라 관문공항은 글로벌 기업유치와 미래산업육성에 가장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역의 항공시설 이용여건은 수십년 동안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영남권 신공항은 십수년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채,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대신 갈등과 반목만을 유발시켜왔고, 백지화와 재추진을 수차례 반복해오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16년에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결론 내렸음.
-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지역의 최대현안 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에 대해 매우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어, 정부의 추진의지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우리 대구·경북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계획대로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본 결의안을 제출함.

□ 주문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참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전배운)

□ 취 지

- 본 결의안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영남권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공항 기능은 신공항으로 이전하고, K-2는 종전부지를 활용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16. 6.21일 영남권신공항 유치무산으로 대구공항이 존치하게 되면서 K-2 단독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이의제기로 K-2와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통합이전이 결정(‘16. 7.11)되었음.
- 이후, K-2이전 최종건의서를 제출(‘16. 7.12)하였으며 군공항은 기부 대 양여방식(국방부), 민간공항은 매각대금 등을 활용(국토부)하여 이전하는 통합이전 방식을 결정(‘16.8.11)하였고 같은 달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판정(‘16.8.30)을 받았음.
- 현재 특별법 절차에 따라 우리시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국방부에 검토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확정,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와 유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됨.
- 대구지역에 군공항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도심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도심에 위치함에 따라 소음피해, 고도제한, 항공작전 수행 애로 등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각종 군사시설과 인근지역은 관련된 규제로 인해 개발다운 개발 한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종전에는 대구공항 연간 이용객이 108만명(2013년)에 불과하였으나, '17년에는 356만명이 이용하였고 '18년에는 수용한계(375만명)를 넘어 400만명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서 확장이 불가능 한 실정임. 따라서 여객처리는 물론 항공물류가 가능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하여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지역의 최대현안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이 지역이 기주의나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